

창원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1142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0. 1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와 D(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9. 4. 1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취소한다.
나. D에게, 피고 C은 창원지방법원 진해등기소 2020. 6. 19. 접수 제129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B은 같은 등기소 2019. 4. 17. 접수 제60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이봉수

